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9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박정현 · 장종태
김정호 · 송재봉 · 임미애
강준현 · 정준호 · 박 정
염태영 · 홍기원 · 김남희
박상혁 · 신영대 · 이광희
김기표 · 정태호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,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·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.

한편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르면,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·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(ITS;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로 정의하고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·해상·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

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,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제6호 등).

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,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,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. 이에,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,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)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 중 “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”을 “이용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(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7호 중 “도로교통정보체계의”를 “지능형교통체계의”로 한다.

제60조의 제목 중 “도로교통정보체계의”를 “지능형교통체계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로교통정보체계를”을 “지능형교통체계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로교통정보체계를”을 “지능형교통체계를”로, “일반 국민에게”를 “일반 국민 또는 교통정보의 수집·가공 및 제공 등을 업(業)으로 하는 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도로교통정보체계를”을 “지능형교통체계를”로, “도로교통정보체계의”를 “지능형교통체계의”로 한다.

②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신설, 개축, 확장하거나 그 밖의 대규모 개량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 및 공사 계획에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10조제3항제2호 중 “도로교통정보체계의”를 “지능형교통체계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생략)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<u>이용</u> 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이용</u> 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(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-----
제6조(도로건설·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건설·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7. <u>도로교통정보체계의</u> 구축·	제6조(도로건설·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지능형교통체계의</u> -----

운영에 관한 사항

8. (생략)

④ ~ ⑧ (생략)

제60조(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
· 운영 등) ① 도로관리청은
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
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·운
영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
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
도로정보를 수집·가공하여 일

8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·
운영 등) ① -----

지능형교통체계를-----
-----.

②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신설,
개축, 확장하거나 그 밖의 대규
모 개량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
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능
형교통체계를 설계 및 공사 계
획에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구
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
경우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
화법」 제73조에 따른 지능형
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관련 표
준을 준수하고, 필요한 경우 관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
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
여야 한다.

③ -----지능형교통체
계를-----
-----일반

<u>반 국민에게</u> 제공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③ <u>도로교통정보체계를</u>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<u>도로교통정보체계의</u> 구축·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1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(생략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 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제60조에 따른 <u>도로교통정보체계의</u> 구축·운영 등 업무 3. 4. (생략) ④ (생략)	<u>국민 또는 교통정보의 수집·가공 및 제공 등을 업(業)으로 하는 자에게</u>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<u>지능형교통체계를</u>-----<u>지능형교통체계의</u>----- -----. 제11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지능형교통체계의</u>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